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2022.2.28(월)]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
 ※ 아래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당사 현장접수처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사전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로 대체)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 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우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까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필수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 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공급신청자의 해외 체류중인 기간 내 세대원의 동일 국가 체류여부 확인을 위하여 여권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사전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 모든 서류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2022.2.28(월)] 이후 발행분에 한함, '전체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
 ※ 아래 서류 외 사전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 특별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자녀	본인: 만 19세 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자녀: 만 18세인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현장접수처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